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2029426 판결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D

변론 종결 2015. 11. 27.

판결 선고 2016. 1. 8.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합5602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1 원고 A로부터 E 주식회사 발행 주식 30,000주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50,000,000원을, 2 원고 B로부터 위 회사 주식 15,000주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75,000,000원을, 3 원고 C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5,000주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 C에게 7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을, 원고 B에게 75,000,000원을, 원고C에게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23.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 A로부터 E 주식회사 발행 주식 30,000주를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50,000,000원을, 2 원고 B로부터 위 회사 주식15,000주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75,000,000원을, 3 원고 C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5,000주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 C에게 7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운수보관창고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3. 2. 24. 설립된 회사인데, 2013. 10. 31. 폐업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2008. 9. 2.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피고가 40,000주, 원고 A가 30,000주, 원고 B, C이 15,000주씩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8. 12. 24.자 주주명부에는 위 100,000주 중 피고가 65,000주, F이 15,000주, G과 H가 10,000주씩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들은 2008. 12. 중순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을 1주당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원고 A의 경우 150,000,000원, 원고 B,C의 경우 각 75,000,000원)으로 각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피고가 원고들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5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각해당 주식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해당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만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피고는 아무런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각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위 2008. 12. 24.자 주주명부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들 명의로 이전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주식의 가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A에게 위 30,000주의 가액 상당액 150,000,000원을, 원고 B, C에게는 각 15,000주의 가액 상당액 75,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소외 회사의 2008. 9. 2.자 주주명부에 원고들과 피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2008. 12. 24.자 주주명부에는 피고, F, G, H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하여 2009. 2. 23. 원고 A는 900,000원의, 원고 B, C는 450,000원의 각 증권거래세를 인천세무서에 납부하였는데, 당시 증권거래세 세율은 1,000분의 5인 사실, 위 증권거래세 납부일 무렵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는 사실, 서울세관은 2014. 3. 25. 원고들과 피고가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 8. 14.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가, 2014. 9. 19.에는 피고가 위 2013. 8. 14. 현재위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3,181,398,15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통지서를 보냈는데, 피고는 서울세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갑 제1호증의 1 내지갑 제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15. 3. 27.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당심 법원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의 남편 I가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을 담보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위 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없으며 원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남편인 I는 J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7492(본소), 2012가단35957(반소) 대여금 등 청구소송의 2012. 7. 6.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으로부터 2004. 7. 말경8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저는) 관리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영업 쪽만 담당하고, 나머지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D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제가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다만, 제가 소외 회사 설립 초기에 D에게 제 주식 중 40%를 주었다.", "(현재도 소외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다가 ② 원고들은 위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라고 하면서도 그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 부분을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를 믿고 계약서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 주장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500,000,000원을 차용한 2009. 7.경에는 피고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때부터 2013. 7. 25. 소외 회사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피고에게 각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실제로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 없이 소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3.의 1 내지 3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008. 9. 2.자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각 주식은 위 2008. 12. 24.자 주주명부 기재와 같이 명의개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주주에 변동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서울세관의 처분 등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비롯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어 피고가 2008. 12.경에 위 각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2008. 12.경에 위 각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들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주식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한소영, 판사 신종오